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태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2468
----------	-------

발의연월일 : 2018. 3. 14.

발의자 : 김용태 · 김선동 · 최교일
이종배 · 박명재 · 강길부
정유섭 · 정태옥 · 정양석
문진국 · 김종석 · 김재경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그 동안 다수에 걸쳐 특수임무수행자 및 그 유족에 대한 보상금 등의 신청 기한을 연장해 왔으나, 아직도 불가피한 사정으로 기한 내에 신청을 하지 못하였던 사람들이 보상금 등의 지급을 신청 하려 하여도 이미 법적 신청 기한이 지나 심의 자체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보상금 등의 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을 다시 2019년 6월까지 연장하여 미처 신청하지 못하였던 특수임무수행 및 그 유족에게 보상금 등을 지급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2항).

법률 제 호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이 법 시행 후 3개월 이내에”를 “2019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보상금등의 신청) ① (생 략)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 등의 지급신청은 <u>이 법 시행</u> <u>후 3개월 이내에</u> 하여야 한다.	제10조(보상금등의 신청) ① (현 행과 같음) ②----- ----- <u>2019년 6월</u> <u>30일까지</u> -----.